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 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7. 13
시민보사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6월 23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년 6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26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94. 7. 13)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시민국장 文忠實)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처예규 제101호와 부합되게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조대현)

1. 본 조례 제26조(과태료부과등)에서 정한 과태료부과등을 제정당시 서울특별시 조례 제27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에 위임한 바 있으나,
2.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당초 제정한 본조례 제26조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시 본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문제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본조례 제정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칙에 위임한 것은 백지위임으로 중대한 하자임이 발견되어 금번개정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에 현재 규칙 제4조에 규정된 별표의 과태료 기준을 조례에 끌어올려 하자를 치유하고 본

조례 개정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제26조(과태료 처분통지등)을 (과태료 부과기준 및 처분통지등)으로 조문 제목을 수정하고 제26조 1항 내용 중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와 “그 상대방에게”문안 사이에 “별표 가정한 기준에 의거 부과하고”를 삽입하여 개정하면 조례가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칙에 백지 위임한 것은 치유되므로 본 조례 개정시 동시에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또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되 각종서식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조례문안을 간결하게 정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 조례증개정조례(案)

의안	240
번호	제 출 년 월 일 : 1994년 6월 일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처예규 제101호와 부합되게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2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환경처예규 제101호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 : 의견없음
- 라. 기타 : 개정조례안(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과태료부과등)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시 조례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6조(과태료처분 통지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p> <p>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신설)	<p>제27조(청문)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p>
(신설)	<p>제2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신설)	<p>제2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신설)	<p>제30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
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2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내지 제28조를 제31조 내지 제32조로 하고, 제27조 내지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청문)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 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2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수납부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